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07 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박 정·서영석·장철민

김태선 · 허 영 · 이재강

차규근 • 김정호 • 윤준병

위성곤 · 김영환 · 한민수

박홍배 · 김영진 · 송옥주

황정아 • 권향엽 • 안도걸

소병훈 • 이용선 • 허성무

임호선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,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,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.2조원을 미교부하였음.

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.24%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,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.

특히,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,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

목적에 반하는 것임.

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"제5조제3항"을 각각 "제5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부세 조절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(생	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(현행과		
략)	같음)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<u>제5조제3항</u> 에 따라 같은 항	4. <u>제5조제4항</u>		
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			
5. <u>제5조제3항</u> 에 따라 같은 항	5. <u>제5조제4항</u>		
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			
6. <u>제5조제3항</u> 에 따라 같은 항	6. <u>제5조제4항</u>		
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			
제5조(예산 계상) ① ~ ② (생	제5조(예산 계상) ① ~ 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		
	하지 아니하고서는 제1항에 따		
	라 계상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		
	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.		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		